

의안번호	제2925호
의결	2025. . .
연월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5. 3. 21.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5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 의 자 : 김향숙, 최두임, 김석한,
김원순, 정영환 의원(5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 예고기간: 2025. 3. 21.(금) ~ 2025. 3. 27.(목) [6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마을 공동체 조성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노인·청소년·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

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

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

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